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산보고서 검증 및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 확대〉
■ 송언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198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정산보고서 검증 및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 확대 (안 제27조 및 제27조의2)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송언석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11. 4.

다. 회 부 일 : 2024. 11.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감사인의 검증을 받도록 하고, 보조사업자 중 회계연도에 1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의 경우 회계연도마다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국고보조금 규모가 102조원을 넘는 등 보조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국가재정이 상당한 만큼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및 부정운용 방지를 위해 외부인에 의한 감사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자 및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가 있는 보조사업자의 기준이 되는 보조금 금액을 각각 1억원, 3억원으로 함으로써 정산보고서의 검증 및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자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및 제27조의2).

Ⅲ. 검토의견

1. 정산보고서 검증 및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 확대 (제27조 및 제27조의2)

현행	개정안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인 검증 - 기준 금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시행령에서 1억원으로 규정 - 보조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에서 제외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작성 감사보고서 제출 - 기준 금액: 10억원 이상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인 검증 - 기준 금액: 1억원 이상 - 보조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1억원 이상인 경우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 (다만, 보조사업의 특성 고려하여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생략 가능)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작성 감사보고서 제출 - 기준 금액: 3억원 이상

현행법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억원)¹⁾ 이상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등”이라 함)는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감사인²⁾의 검증을 받도록 규정(보조사업자등이 지방자치단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 ②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을 말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감사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체인 경우 제외)하고 있고³⁾,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등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보조사업자등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외)하고 있음⁴⁾.

개정안은 감사인의 검증을 받는 정산보고서 기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서 1억원으로 명시하여 법률에서 규정하고,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 기준 금액을 종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나.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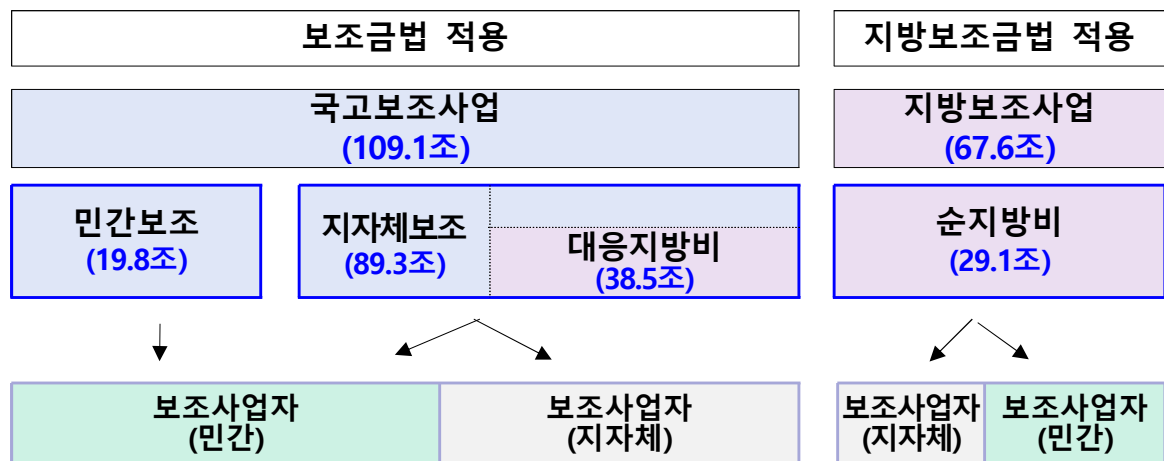
-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업자”라 하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업자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갈음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특정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다시 교부하는 등 그 특성상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특정사업자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회계감사의 기준 및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향 조정하며, 지방자치단체도 원칙적으로 정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인 검증대상에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고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고보조금의 부정운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2024년 국고보조금 전체 예산규모는 109조 1,000억원으로, 보조금 규모가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와 함께 2023년에 부정수급 적발건수 493건, 금액은 699억 8,000만원에 이르는 등 보조금의 부정수급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국고보조사업 및 지방보조사업 현황]

(2024년 본예산 기준)



※ 자료: 기획재정부

[최근 5년간 보조금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국고보조금	86.7	97.9	102.3	102.3	109.1

※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단위: 건, 억원, %)

구 분	부정징후 사업 수		부정수급 적발건수		
	건수(A)	금액	건수(B)	금액	징후대비 적발률(B/A)
2020년	3,853	2,662	132	31.5	3.4
2021년	4,243	1,757	231	34.8	5.4
2022년	4,603	2,379	260	98.1	5.6
2023년	7,521	5,340	493	699.8	6.6
합계	27,395	14,872	1,270	889.2	4.6

※ 자료: 기획재정부

특히, 감사원·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 등 주관 감사에서 민간 보조사업자의 회계처리 부적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국무조정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 시⁵⁾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민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까지 외부검증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보조금 전반에 대한 투명하고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정산보고서 검증 및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여 소규모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가진 외부 전문가의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동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2016년 4월 「보조금 관리에 관

5) 1차 점검: 2021년 9월~2022년 8월, 2차 점검: 2022년 10월~2023년 5월

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정산 검증 및 회계감사 등을 도입하였음에도 보조금 부정수급이 여전히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대상 및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 기준 금액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까지 외부검증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보조금 전반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지방의회, 감사원 등 감독기관 통제장치 등을 통해 재정지출의 적정성, 투명성을 既 확보 중으로, 개정안에 따른 외부 검증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를 경시, 불신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강한 반발과 정치적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 검증에 따른 비용 발생과 보조사업 정산 지연, 업무 증가 등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수반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개정안은 정산보고서 검증 및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여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가진 외부 전문가의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조금의 적법한 집행 여부와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따른 정산보고서 검증 및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 변동]

구 분		현 행	개정안
정산보고서 검증대상 (사업 기준)	민간	1억원 이상(20,238개) ⁶⁾	1억원 이상(20,238개)
	지자체	-	1억원 이상(13,753개)
	대상수	20,238개	33,991개
외부 회계 감사대상 (사업자 기준)	민간	10억원 이상	3억원 이상
	대상수	2,230개	5,542개

※ 자료: 기획재정부(2024년 기준)

또한, 정부는 2023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인 검증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자들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강화⁷⁾ 하였는데, 개정안은 현행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검증대상이 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률의 명확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같이 정산보고서 검증 및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검증 및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외부 감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영세한 보조사업자들에게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6) 시행령 규정

7) 대통령령 제33546호(2023. 6. 20. 시행)

[정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인 검증 관련 비용⁸⁾]

보조금 규모	정산(검증 포함) 위탁 비용	비 고
1억원 미만	~ 80만원	
3억원 미만	~ 100만원	
5억원 미만	~ 150만원	
10억원 미만	~ 160만원	
10억원 이상	180만원 ~	

※ 자료: 기획재정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작성 관련 비용⁹⁾]

자산 규모	수수료	비 고
1,000억원 이상	7,300만원	
200억원 ~ 1,000억원	2,100만원	
200억원 이하	1,400만원	

※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정산보고서 감사인 검증 관련 비용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작성 관련 비용을 살펴보면 먼저, 감사인 검증 비용을 포함하는 보조금 정산 위탁 비용으로 보조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최소 1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감사보고서 작성을 포함하는 감사인의 감사 수수료는 보조금 연간 총액이 20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400만원이 소요됨을 확인할 있음.

8) 고용부, 과기부, 문체부, 식약처 소관 일부 보조사업 운영규정 내 표준 수수료

9) 한국공인회계사회 2022년 기준(법인 기준)

물론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들의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감사보고서의 작성비용을 보조금에서 지출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세한 보조사업자 등의 재정 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라 확대되는 감사보고서 제출대상 전체에 대한 비용 보조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지원대상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총액에 대한 변동 없이 검증 및 감사보고서 작성비용을 보조금에서 지출하게 되면 그 차액만큼 실질적인 보조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정산보고서 검증대상에 원칙적으로 포함되도록 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의회 결산심사 및 감사원 회계감사를 거치는 등 사전적·사후적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정산보고서 검증 및 감사보고서 작성 사항]

정산보고서 검증	감사보고서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 반환액 등 포함하여 정산보고서 작성(일자별 집행명세서 첨부) • 감사인이 정산보고서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증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보조사업별 세부내용 및 보조금 증감내역 등 포함) 등을 작성 • 감사인이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여 감사 후 감사결과 기술

※ 자료: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기획재정부공고),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기획재정부공고),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기획재정부공고)을 바탕으로 재구성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생략)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u>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u> 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② ----- ----- ----- ----- ----- ----- ----- ----- <u>간접보조금</u> <u>의 총액이 1억원</u> ----- ----- <u>간</u> <u>접보조사업자는</u> ----- ----- ----- ----- ----- ----- ----- -----
<신 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u>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u>

현 행	개정안
③·④ (생략) 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u>10억원</u>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업자”라 하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	<u>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산보고서의 검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u> <u>④·⑤</u>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 ----- ----- -----3억원----- ----- ----- ----- ----- ----- ----- -----

현행	개정안
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 ----- ----- -----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문의처
02)6788-5152